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부 록 목 차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가. 자치행정과	2면
나. 회계과	5면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면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면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30면

자치행정과(일반회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	비고
세 입	530,679	156,300	374,379	239.53	
세 외 수 입	11,555	10,000	1,555		
지 방 교 부 세	300,000	0	300,000		
보 조 금	219,000	146,300	72,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4	0	124		
세 출	12,170,409	11,444,720	725,689	6.34	
자치행정 역량강화	3,158,002	2,659,265	498,737		
주민자치 역량강화	558,080	565,295	△7,215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	548,187	552,622	△4,435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	293,123	198,377	94,746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운영	11,710	11,710	0		
행정 운영 경비 (동)	7,505,665	7,361,223	144,442		
행정운영경비(자치행정과)	95,515	96,228	△713		
재무활동(자치행정과)	127	0	127		

□ 주요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p281)

○ 지방교부세

- 복산동 통합청사 시설개선(성립전) ----- 300,000천원

○ 보조금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국 1,000천원
-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성립전) ----- 시 84,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 시 70,000천원

나. 세출 예산

○ 신규편성

- 복산동 통합청사 시설개선(성립전)(특)(p286) -- 300,000천원
- 병영2동 1·2층 화장실 정비(p287) -- 17,000천원
-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성립전)(사비)(p289) -- 71,600천원
- 생활민원 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p289) -- 8,000천원
- 생활민원 서비스 참가자 실비지원(성립전)(p289) -- 12,400천원

○ 증(감)액 편성

-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보수(p288) -- 154,178천원
(증 5,455천원)
- 행정운영경비(동) 인력운영비(p289) -- 7,025,910천원
(증 146,518천원)

- 복산동 동 통합 환경개선 사업(p286) -- 0천원
(△ 300,000천원)
- 운영수당(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시·구비)(p287) -- 233,000천원
시 70,000천원
구 163,000천원
(△ 10,000천원)

□ 검토 의견

-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56백만원보다 374백만원 증액된 530백만원,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1,445백만원보다 725백만원 증액된 12,17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으로
 - 예산안 286페이지, 동 청사 관리 401-01(시설비) 복산동 동 통합 환경 개선사업 300,000천원(성립전)(특)신규편성 등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	비고
세 입	2,129,377	1,408,600	720,777	51.17	
세 외 수 입	2,129,377	1,408,600	720,777		
세 출	2,818,175	2,333,228	484,947	20.78	
신 퇴 받 는 회 계 운 영	84,580	79,390	5,190		
효 율 적 인 재 산 관 리	2,566,975	2,089,605	477,370		
행 정 운 영 경 비	166,620	164,233	2,387		

□ 주요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p297)

○ 세 외 수입

- 청사유료주차장 요금징수분 --- 78,000천원
- 대회의실 사용료 --- 5,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900,000천원
-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 43,974천원

나. 세출예산

○ 신규 편성

- 계약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p301) --- 5,500천원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p302) --- 23,000천원
- 도호부아문 해체 및 임시주차장 조성공사(p302) --- 110,000천원
- 설계비(중구청 증축)(p302) --- 265,000천원

○ 증(감)액편성

- 청사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 설치(p302) --- 11,733천원
(증 6,533천원)
-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p301) --- 343,017천원
(△ 1,008천원)

□ 검토 의견

-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408백만원보다 721백만원 증액된 2,129백만원,
-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333백만원보다 485백만원 증액된 2,818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으로
 - 예산안 302페이지, 청사유지 관리 401-01(시설비) 도호부아문 해체 및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110,000천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함.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3
----------	------

제출연월일: 2024. 5. 2.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문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 (당초)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기재
- (변경)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을 추가 기재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생략한 규정 정정(안 제4조 제2항)

- (당초) 영 제7조의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처분에 따른 용도 폐지
- (변경) 영 제7조의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 ※ 법 제16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는 심의를 하여야 함.

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일 변경(안 제16조)

- (당초) 기부채납일 → (변경) 사용허가를 받은 날
- ※ 법 제21조제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토로 명시됨.

라.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1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8 (제263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4313호, 2024. 4. 4.)

라. 입법예고: 2024. 4. 1. ~ 4. 22.(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취득.처분 및 처분에 따른 용도폐지”를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처분”을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처분”을 “취득·처분”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이상”을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적이상”을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부채납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 중 “유지.보수”를 “유지·보수”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다시대여하는”을 “다시 대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호가목 중 “공용.공공용”을 “공용·공공용”으로 한다.

제31조제7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고용노동법」 제19조 2항”을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로 한다.

제37조제1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개발.관리”를 “개발·관리”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p> <p>① <u>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신 설></u></p> <p>2. (생략)</p> <p>5.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u>취득·처분 및 처분에 따른 용도폐지</u></p> <p>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u>취득·처분</u></p> <p>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u>취득·처분</u></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p> <p>① · ② 삭제</p> <p>③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p> <p>① <u>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 ----- -----.</p> <p>1. ----- -- <u>취득·처분</u></p> <p>2. ----- ----- ----- <u>취득·처분</u></p> <p>3. ----- ----- ----- <u>취득·처분</u></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p> <p>③ (현행과 같음)</p>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인 재산

가.·나. (생략)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나. (생략)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기부채납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제 사용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④ -----

----- 각 호 -----

-----.

1. -----
----- 금액 이상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 면적 이상 -----
--

가.·나.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기간) -----

사용허가를 받은 날 -----
----- . <단서 삭제>

제17조(관리) -----
----- 유지·보수 -----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7조(대부료 요율)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나. ~ 라. (생략)
- 3.·4. (생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⑥ (생략)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

다시 대여하는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제4항까지-----

제27조(대부료 요율) -----

1. (현행과 같음)

2. -----
가. 공용·공공용-----
나. ~ 라.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10조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
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
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
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
내로 경감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법」 제19조 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⑨ (생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 다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산광역
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
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
반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
본법」 제32조의2-----

⑧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이내 분할납부

가. (생략)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라. (생략)

2.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p>한다.</p> <p>1.·2. (생략)</p> <p>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u>개발·관리</u>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p> <p>4. (생략)</p> <p>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개발·관리</u>----- -----</p> <p>4. (현행과 같음)</p>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1항과 같음)</p>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회계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최영재
- 연락처: (052)290-3195